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재무과	1

(2012. 2. 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1월 20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2년 1월 26일

4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제27조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2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3, 제19조, 제21조, 제32조, 제45조 및 제81조
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6조 및 제36조의2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21641호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되고 2011년 1월 13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며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임

<주요내용>

- (1) 안 제10조에서는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,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시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
- (2)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같은 조제5항의 “일반경쟁입찰”을 “일반입찰”로 명칭 변경함
- (3) 안 제24조에서는 「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명칭을 변경함

- (4) 안 제24조, 안 제27조, 안 제28조,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에서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“아파트형 공장”을 “지식산업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함
- (5)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대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“1,000분의 25 이상”을 “1,000분의 20 이상”으로 변경함
- (6)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인용법률인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의 제명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변경함
- (7) 안 제31조과 안 제88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, 사용료 및 변상금의 최소금액을 “50만원 초과”에서 “100만원 초과”로 변경함
- (8) 안 제34조의2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 3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그 교환차금(마포구가 수령하는 경우)을 5년 이내에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환차금 분납제도를 신설함

- (9)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

[검토의견]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31일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용요율이 기존 1,000분의 25에서 1,000분의 20으로 개정되었고,

이어서 2011년 1월 13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대부료 요율을 국유지 및 사유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,

관련 법 및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